의안번호	제489호			
의 결	2024년 월 일			
연 월 일	(제 회)			

#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박지헌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1월 8일

#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(박지헌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9

발의연월일 : 2024년 1월 8일

발 의 자 : 박지헌, 이동우, 김종필,

김호경, 박진희, 변종오,

유재목

#### 1. 제안이유

충청북도의 영농활동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영농폐기물의 수거 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(안 제4조)

다.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라.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3. 조례안 전문 : 붙임

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붙임

나. 비용 추계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관련 협의 :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

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##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의 농업환경 보전과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영농폐기물"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·농약빈병· 폐부직포·폐반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.
- 2. "영농폐기물 수거자" 란 충청북도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 인, 단체 및 운반업자를 말한다.
- 3. "운반업자" 란 영농폐기물을 배출지에서 직접 수거하여 운반하는 사람(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)을 말한다.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영농폐 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,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충청북도민과 영농폐기물 수거자 및 운반업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4조(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1. 영농폐기물 수거 방안
  - 2.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
  - 3.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
  - 4.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
  -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·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충청북도 순환경제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- 제5조(영농폐기물의 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1. 영농폐기물 발생량
  - 2.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
  - 3.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
  - 4.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
  -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·군수 및 관계 기관 등

- 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1.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
  - 2.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
  - 3.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
  - 4.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지원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 【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】

제9조(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, 비료, 가축분뇨,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,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,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, 폐농어업자재의 투기(投棄)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10조(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, 농어업 용수,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,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,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, 온 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4조의2와 제16조 및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.

# 【폐기물관리법】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, 주민과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7. 8. 3., 2010. 7. 23., 2013. 7. 16.〉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고,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8. 3.>

③ ~ ④(생 략)

#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# 1. 사업개요

O 도내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영농폐기물의 수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 원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

#### 2. 비용 발생 요인

O 영농활동 중 발생된 영농폐기물의 수거비 지원

#### 3. 관련조문

- O 조례안 제3조(도지사의 책무)
  - 도지사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## 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으로 함
- O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O 물가상승,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
- O 조례안 제3조(도지사의 책무)에 의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대한 비용 추계
- 나. 추계 결과: 16,614,450천원
  - 연 사업당 최대 <u>3,322,890천원 소요예상</u>

농약용기류 수거보상(대응): 596,790천원

-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: 2,256,100천원

-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: 340,000천원

-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: 60,000천원

- 영농폐기물 수거·처리 지원사업: 70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국비, 도비, 시·군비, 기타 등

- 농약용기류 수거보상(대응): 국 30%, 도 30%, 한국작물보호협회 40%
-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: 국비 인센티브(20원/kg), 도 20%, 시·군 80%
-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: 국 30%, 시·군 70%
-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: 도 30%, 시·군 70%
- 영농폐기물 수거·처리 지원사업: 도 30%, 시·군 70%

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# 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		구 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입(국비)			512,200	512,200	512,200	512,200	512,200	2,561,000
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(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)			410,200	410,200	410,200	410,200	410,200	2,051,000
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(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)		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
	서	출(도비)	587,217	587,217	587,217	587,217	587,217	2,936,085
(농역	약용기		179,037	179,037	179,037	179,037	179,037	895,185
( <del>/</del>	영농ī 5존I	폐기물 수거 지원 예비닐 수거보상금)	369,180	369,180	369,180	369,180	369,180	1,845,900
(	농약	폐기물 수거 지원 빈병수거함 설치)	18,000	18,000	18,000	18,000	18,000	90,000
(	경농 <sup>፲</sup> 영농 <sup>፲</sup>	폐기물 수거 지원 폐기물 수거·처리)	21,000	21,000	21,000	21,000	21,000	105,000
		<b>재원 조달</b> 도, 시·군비 등)	3,322,890	3,322,890	3,322,890	3,322,890	3,322,890	16,614,450
읮		소 계	512,200	512,200	512,200	512,200	512,200	2,561,000
의존재원(국)	보조금	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	410,200	410,200	410,200	410,200	410,200	2,051,000
(북)	금	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510,000
	소 계		587,217	587,217	587,217	587,217	587,217	2,936,085
   자		농약용기류 수거보상(대응)	179,037	179,037	179,037	179,037	179,037	895,185
자체 수입(도)	짂	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	369,180	369,180	369,180	369,180	369,180	1,845,900
(토)	방세	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	18,000	18,000	18,000	18,000	18,000	90,000
		영농폐기물 수거·처리지원사업	21,000	21,000	21,000	21,000	21,000	105,000
	소 계		1,805,720	1,805,720	1,805,720	1,805,720	1,805,720	9,028,600
١.,	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		1,476,720	1,476,720	1,476,720	1,476,720	1,476,720	7,383,600
시	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		238,000	238,000	238,000	238,000	238,000	1,190,000
군		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	42,000	42,000	42,000	42,000	42,000	210,000
	영농폐기물 수거·처리 지원사업		49,000	49,000	49,000	49,000	49,000	245,000
71	소 계		417,753	417,753	417,753	417,753	417,753	2,088,765
기    타	(-	농폐기물 수거지원 환경부→환경공단)	179,037	179,037	179,037	179,037	179,037	895,185
		약용기류 수거보상 한국작물보호협회)	238,716	238,716	238,716	238,716	238,716	1,193,580